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6. 6. 10.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4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4월 2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중에 포함되는 그 부대복리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과 지방세법의 개정과 맞추어 중복 감면의 배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는 100분지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지 3의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여 명확히 함.
-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그 영구임대주택에 포함되는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당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여 명확히 함.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함.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제11조 제1항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도 당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한 것이며, 제17조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세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용시한을 199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 또는 감면해 주는 부대복리시설의 범주가 애매하여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된 바,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당해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제까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감면해 주던 것을 '95. 12. 6.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적·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내무부 세제 13400-126('96.3.21)호와 서울시 세정 13400-191('96.3.28)호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 절차가 있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果 : 원안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년월일 : 1996. 4. 2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 중에 포함되는 그 부대복리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과 지방세법의 개정과 맞추어 (중복 감면의 배제) 조항을 신설키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는 100분지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지 3의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여 명확히 함.
-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그 영구임대주택에 포함되는 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당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여 명확히 함.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9조, 제294조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없음
- 라. 조례안 : 없음

파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1항 본문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로 하고 동조 2 항중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